

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4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4년 9월13일

발 의 자 : 의원의 인

제안이유

- 제정당시(2001. 7. 20)와 달리 실제운영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.

주요내용

-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원연구 단체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개정
- 의원 및 의원연구 단체의 연구활동 종료시점(11월말)과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 (현행 : 10월 31일 → 변경 : 12월 10일)

참고사항

-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하고, 제4항을 제2항으로,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-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연도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결과 보고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

제11조 제1항중 "10월 31일"을 "12월 10일"로 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회의)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</p> <p>②정례회는 당해연도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결과 보고 심의를 위하여 매년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최시기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④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 및 연구단체대표를 참석토록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</p> <p>⑤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의 연구계획 또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6조(회의)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연도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결과 보고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②.....</p> <p>③.....</p>
<p>제11조(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)①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 및 연구단체는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각 15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(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)①.....12월 10일까지</p> <p>.....</p>

2004. 9.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

위의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중개정
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
이 발의합니다

붙 임 :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3부 끝.

발 의 자 : 정윤숙(인)

의원 외 6인

(찬성자 서명 붙임)

□ 찬성의원 명부

소관위원회	성명	서명	날인
기획행정위원회	김홍운		
〃	이필용		
산업경제위원회	정운숙		
〃	박종갑		
관광건설위원회	강우신		
교육사회위원회	이범운		
〃	조계숙		